

의안번호	제 182 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의자	안지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월 4일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4일

발의자 : 안지윤, 이옥규,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치영,
조성태

1. 제안이유

- 충북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제2조)
-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걷기운동 포인트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걷기 사업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 4호
- 다. 협의 :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 (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수와 걷기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3.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4.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6조(기록·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의 지급,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걷기 앱을 통한 목표 달성 시)
- 걷기 앱 사용료 지급
-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3. 관련조문

- 안 제4조(지원내용)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하여 추계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내용	예산('22)
	계	6,889,430천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건강행태개선 *13개영역 : 읍주폐해예방(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방문건강관리, 금연	349,732천원 (걷기활성화사업)

□ 개 요

- 기 간 : 2022. 1. ~ 10.
- 대 상 : 충청도민 중 스마트폰 사용자
- 내 용
 - 커뮤니티 개인별, 그룹별, 목표 걸음 수 달성자(마일리지 적립으로 인센티브 지급)
 - 걷기 앱 활용 이벤트(챌린지) 운영 및 앱 사용료 지급
 - 걷기 정보제공 및 걷기실천 홍보·캠페인 등

